

영등포구의회
제199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
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김용범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7. 3. 3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

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01호로 2017년 2월 22일 김용범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구 자살 사망자수는 25개 자치구 중 8위인 85명¹⁾으로 4.3일에 1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2015년 우리구 자살률은 구민 10만명당 22.8명으로 2013년 18.6명에 비해 22.6%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²⁾
- 나. 따라서 소중한 주민의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에 설치되어 있는 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’의 위원회 구성, 회의운영 방식 등 일부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위원회를 운영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

1) 서울시 통계정보 시스템, 2015년 자살률(구별)

2) 통계청, 인구 10만명당 자살률(구별)

3. 주요내용

- 가.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 추가 (안 제9조제1항)
- 나. 위원수를 조정(9명⇒13명) (안 제9조제2항)
- 다.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 폐지 (안 제9조제6항)
- 라. 회의개최는 반기별 1회 정례화 (안 제10조제1항)
- 마.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(안 제13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소중한 주민의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, 회의 방식 등을 개정하는 안건으로서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9조제1항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사업의 자문 및 적극 추진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는 바,
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위원회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,
- 안 제9조제2항에 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‘9명 이내’ 에서 ‘13명 이내’로 조정한 것은

자살 고위험군과 최접점에서 접촉하는 상담전문가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인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, 민·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다양한 사례수집과 체계적인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

- 안 제9조제6항에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다양한 전문가의 위촉으로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며
- 안 제10조제1항에 위원회 회의를 반기별 1회 개최로 정리화하는 것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며
- 안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상위법령³⁾과 중복되므로 삭제함
- 본 개정 조례안은 구 차원에서 자살예방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,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,

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

3)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제2항

참 고 자 료

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지방자살예방센터(이하 “자살예방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살 관련 상담
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4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5.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
6.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